

## 경운대학교 방화관리규정

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의 철저한 방화관리와 화재로 인한 인적·물적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규정의 준수)** 우리대학교의 교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**제3조(조직)** ① 우리대학교의 방화관리의 총 책임자는 총장이 되며 건물의 실별 및 시설별 방화관리 업무를 위하여 건물별 실별 시설별 방화관리 책임자를 둔다.

② 방화관리 총 책임자는 필요에 따라 방화관리 업무를 관계 교직원에게 위임 또는 대행시킬 수 있다.

③ 평일 및 공휴일의 당직자는 방화관리 책임자가 되며 각 건물의 화기 사용책임은 경비원이 진다.

④ 야간수업 및 행사 또는 개인적인 업무로 퇴근시간이 지연되어 화재가 발생 시는 해당자가 방화관리 책임자가 된다.

⑤ 방화관리는 행정지원처에서 관장한다. <개정 2021.10.01.>

⑥ 관계법령에 의한 방화관리자는 해당분야 실무자 중에서 방화관리 총책임자가 임명한다.

**제4조(방화관리 총책임자의 임무)** 방화관리 총책임자는 건물별, 실별 및 시설별 방화관리 책임자를 지휘, 통솔하며 업무담당 부서를 경유하여 보고되는 사항을 최종 결정한다.

**제5조(건물별 방화관리자의 임무)** 건물별 방화관리 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건물별 방화관리 책임자는 총책임자에 의하여 수임된 사항을 수행하며 각 실별 책임자를 지휘, 통솔하여야 한다.

2. 건물별 방화관리 책임자는 필요로 하는 사항을 업무담당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.

3. 각종 방화시설 및 소방장비 등의 기능과 안전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유사시 상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.

4. 건물 내 가연성 물질 보관 및 난방시설개조, 시설(난로포함)은 업무담당 부서를 경유하여 총 책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

5. 건물별 방화관리책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소방훈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시설별 실별 방화관리 책임자의 의무)** ① 시설별 및 실별 방화관리 책임자는 건물별 방화관리 책임자로부터 수임된 각종 사항을 수행하고 담당시설 및 실내의 방화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.

② 방화관리상 위험, 취약시설은 실별 책임자가 그 책임을 진다.

**제7조 (방화관리 담당부서의 업무)** 방화관리 업무담당 부서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우리대학교의 소방시설의 점검, 정비
2. 시설 및 소화기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훈련
3. 관련법령에 의한 각종 사항의 집행

### 제3장 교육 및 훈련

**제8조(교육 및 훈련)** ① 우리대학교의 교직원(계약직원 포함)은 자체에서 실시하는 소방교육 및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
② 정기 교육은 년2회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교육 할 수 있다.

③ 방화관리 총책임자는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전문인을 외부로부터 초빙할 수 있으며, 필요에 따라 계몽요원을 임명할 수 있다.

**제9조(자위소방대 편성)** ① 화재발생 및 재해로부터 상응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편성 운영한다.

② 당직책임자는 방화관리 총책임자의 허락을 받아 전항의 자위소방대를 동원할 수 있다.

### 제4장 준 용

**제10조(준용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방법 및 소방법 시행령에 의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<2021.10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